

신구조문대비표  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총리령 제1813호, 2022. 6. 30., 타법개정]	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총리령 제1833호, 2022. 11. 25., 일부개정]
<p><b>제26조(영업자의 구분 관리)</b>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특별관리영업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가. 별표 13 II.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1)·2)·4)·5) 및 같은 II. 개별기준의 제8호바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(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)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</p> <p>나.·다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26조(영업자의 구분 관리)</b>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특별관리영업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가. 별표 13 II.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1)·2)·4)·5), 같은 호 다목1)·3) 및 같은 II. 개별기준의 제8호바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(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)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</p> <p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7조(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)</b>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(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)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, 미리 신고한 도착항, 도착 예정일,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2. ~ 10. (생략)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<b>제27조(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)</b>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(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)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, 미리 신고한 도착항, 도착 예정일,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수입식품등의 사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.</p> <p>가. 별표 9 제2호가목1)부터 3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</p> <p>나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</p> <p>2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8조(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</p>	<p><b>제28조(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</p>

<p>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, 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급한 <b>시험·검사성적서(용도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식품등이 별표 9 제2호가목5) 또는 같은 목 10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</b>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 &lt;신 설&gt;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	<p>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, 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급한 <b>시험·검사성적서. 다만,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.</b></p> <p>가. 별표 9 제2호가목5) 또는 10)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나.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(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)에 대해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3조(검사결과 등의 공개) ①</b>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제1항제3호의 경우: 제품명, 제품 유형, 해외제조업소·해외작업장·수출업소, 제조국·생산국,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, 원재료 정보(가공식품,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해당한다), 수입신고인(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) 및 <b>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</b></p>	<p><b>제33조(검사결과 등의 공개) ①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제1항제3호의 경우: 제품명, 제품 유형, 해외제조업소·해외작업장·수출업소, 제조국·생산국,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, 원재료 정보(가공식품,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해당한다), 수입신고인(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), <b>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출한 사진</b></p>
<p><b>제34조(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) ①</b>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해당 수입신고인(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자 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,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(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<b>곡류 또는 두류</b>로서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)</p>	<p><b>제34조(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) ①</b>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해당 수입신고인(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자 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,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(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<b>곡류·서류·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(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)</b>)</p>

<p>&lt;신 설&gt;</p> <p>3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으로서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)</p> <p>2의2.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